

NEWSLETTER 955

Mar 05, 202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출·수입 통관목록 자료 등 과세자료 범위의 확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출·수입 통관자료 목록 자료,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해당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II. 개정 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2조 제1항 제21호 중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 서식”을 “다음 각 목의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28호를 신설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20. (생략) 21.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호서식 22. ~ 127. (생략)	21.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호서식 나. 수출 통관목록 자료 : 별지 제20호의2서식 다. 수입 통관목록 자료 : 별지 제20호의3서식 라. 수출 관련 우편물목록 : 별지 제20호의4서식 22. ~ 127.(현행과 같음) 128. 영 별표 제128호에 따른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의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0호서식

III.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법인세제과, 전화(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Contact



황혜준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이수호 / Asso

T 070-4353-5151
E shlee3@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